

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6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장난감도서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맞춰 시설별로 상이한 연회비 등의 면제 규정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회비 및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- 범위 확대 : (당초) 수급자 → (변경)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대상 추가 : (신설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나. 용어, 문구,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인용사항 정비

(안 제2조, 제8조~제10조, 제14조~제16조,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이하, “센터”라고”를 “이하 “센터”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시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”를 각각 “이용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구미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15조제3항 중 “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회비 및 이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연회비 및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한 <u>6세 미만</u>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의 수당)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9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, “<u>센터</u>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센터의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는 <u>시의</u> 어린이집과 보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7세 이하</u>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의 수당)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 ----- ----- ----- <u>이하</u> <u>“센터”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센터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</u></p>

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용료 등) ① 센터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수급자
2. ~ 5. (생략)
6. 「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

<신설>

7. (생략)
- ③ (생략)

한다)-----

--.

제14조(이용료 등) ① -----

----- 이용료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이
용료-----.

1. -----
-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
----- 시-----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.

제16조(위탁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,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위원회

-----.

제16조(위탁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-----
-----.

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

----- 대해서는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~ 5. 생략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8. 생략
- ② ~ ⑥ 생략

소 관 부 서		아이돌봄과
입 안 자	과 장	박 용 자
	팀 장	이 수 경
	담 당 자	박 명 희 (480-6572)